

제173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안 8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1 ~ 9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1
2011 ~ 1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1 ~ 11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1 ~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2011 ~ 13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3
2011 ~ 14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11 ~ 15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안	47
2011 ~ 16	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55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9
----------	----------

제출연월일	2011. 02.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06. 1. 1시행)으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의 성격과 그 활동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다.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의견 제출에 관한 주민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공고하고, 주민은 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며, 군수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군수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및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마.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10. 11. 23. ~ 12. 13.) 결과 : 별첨(반영 1건, 미반영 4건)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함께하는 거창 (대표 권문상 신용균 이성호)	제1조의 목적에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함으로 “ <u>효율성</u> ”이 추가 삽입 타당	- 미반영 - 예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의거 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투명성과 효율성이 각 조항별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도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어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님
	제2조의 정의에서 「제1호 다목」인 “ <u>가목 및 나목 이외의 자로서 군</u> <u>예산편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u> ”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자칫 특혜를 날을 수 있으므로 삭제	- 반 영 - “예산편성에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용어해석에 따라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목을 삭제
	제4조인 “ <u>군수의 책무</u> ”는 찬성하나 다만, 주민들의 참여방법을 규정하 지 않아 자칫 사문화 될 여지가 있 어“예산참여주민위원회”,“예산정책토 론회”,“주민참여예산협의회”등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봄	- 미반영 - 제4조 군수의 책무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열어 놓고 있 음

<p>제7조 <u>의견수렴 절차</u> 등에 있어 “예산참여위원회”,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참여주민위원회 구성 : 40인,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의견수렴 - 예산정책토론회 : 예산편성되기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사전 설명회, 분야별 토론회, 총괄토론회 매년 1회씩 실시)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 15인, 예산편성의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 15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 분기별 1회 실시 	<p>-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 부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대립에 따른 갈등 조장 등 여러 한계점이 있음 - 본 조례안에서 공청회 및 간담회 등 개최할 수 있어 필요시 수시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p>제10조 <u>연구회 운영</u> 등에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례의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p>	<p>-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견은 포괄적으로 규정하므로써 폭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함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립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10
----------	-----------

제출연월일	2011. 02.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운영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공훈선양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군민 협조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과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보훈단체의 지원,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지원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이나 사망일시금 등 보훈급여금 외에 군 조례로써 지급하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지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 월 5만원

- 전몰군경의 유족 : 월 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라.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사유와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4장 보칙으로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합한 조례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폐지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5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67조, 제68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88조의3, 제101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3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2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 「전자정부법」 제36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에 반영(351,32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1. 31. ~ 2. 1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군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군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추모일 등 행사개최 시 보훈단체 위문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공공시설 이용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제9조(생업지원)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군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는 3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3장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등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 가. 참전유공자 : 월 5만원
 - 나. 전몰군경의 유족 : 월 3만원
2. 사망위로금 : 30만원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① 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서 규정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명예수당을 받을 전몰군경의 유족 순위에 관하여는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명예수당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및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11
----------	-----------

제출연월일	2011. 02.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입증지 전자날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을 통한 수수료 납부방법이나 수입금 정산 사항 등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제16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체계 개선을 위한 민원업무용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1. 1. 6. ~ 2011. 1. 2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인발급기로”를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인발급기”를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사용부서의 장”을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중 “계기”를 각각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각각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중 “무인발급기”를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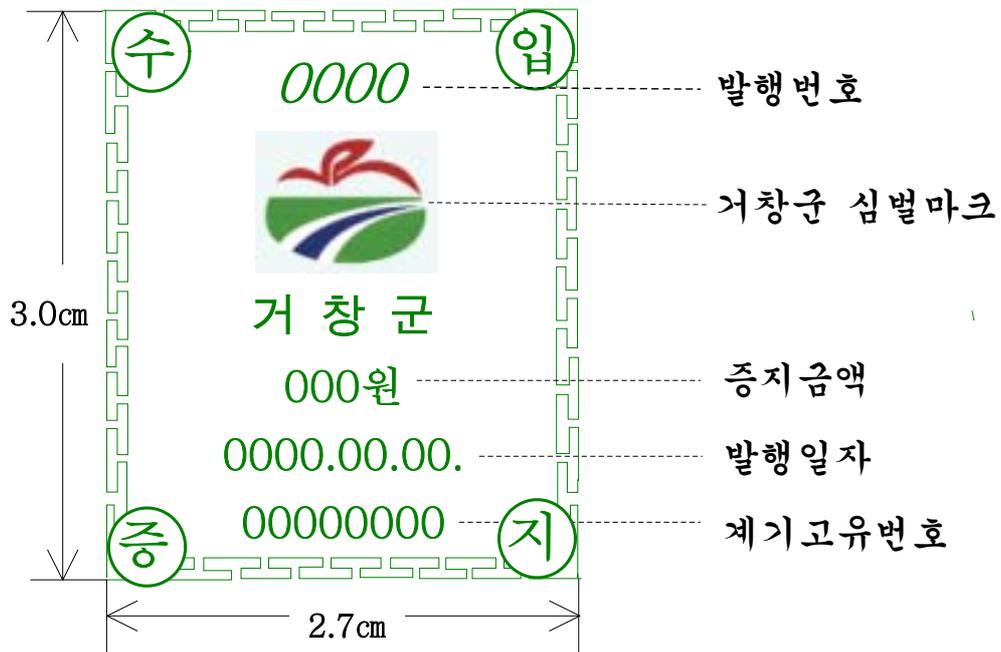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7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u>사용부서의 장</u>으로 하며, 발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6조(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① -----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p> <p>②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p> <p>③ -----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u>각 사용부서의 장</u>-----.</p>
<p>제7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p> <p>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다만, <u>계기</u>에 따라 인영되는 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u>계기</u>에 따라 인영되는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p>	<p>제7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p> <p>① -----</p> <p>---, <u>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u>-----.</p>

[별표 1]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인영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7조 관련)



※ 인영 색상 : 녹색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관리대장

□ 총 관

년 월 일

번호	금 일 까 지 누 계	전 일 까 지 누 계	금 일 결 손		금 일 발 행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 금일발행 내역

1. ○ ○ 원 × ○ ○ 매 = ○ ○ 원
 2. ○ ○ 원 × ○ ○ 매 = ○ ○ 원
 3. ○ ○ 원 × ○ ○ 매 = ○ ○ 원
 4. ○ ○ 원 × ○ ○ 매 = ○ ○ 원
 5. ○ ○ 원 × ○ ○ 매 = ○ ○ 원
- 계 ○ ○ 원정

□ 결손사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12
----------	-----------

제출연월일	2011. 02.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거창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의 준공에 맞추어 수영장 및 탁구장의 개장 및 종료시간과 휴무일,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며, 체육시설 사용자의 사고책임 및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간 갱신에 관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탁구장 포함)와 ‘사격장’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13호 신설).

○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나.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을 국민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개장 및 종료시간

- 국민체육센터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

○ 휴무일(국민체육센터)

-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다.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라.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와 ‘사격장’을 추가함에 따라 그 세부시설별·사용기준별 및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신설함(안 별표).

마.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자의 사고책임에 관한 사항과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간 갱신에 관한 경남도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함(안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1. 1. 13. ~ 2.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내체육관, 테니스장”을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사격장, 테니스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시간”을 “운영시간 및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센터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

②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본문 생략)</p> <p>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u>실내체육관</u>, <u>테니스장</u>,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p> <p>2. ~ 12.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본문 생략)</p> <p>1. ----- --- <u>실내체육관</u>, <u>국민체육센터</u>, <u>사격장</u>, <u>테니스장</u>----- ----- -----.</p> <p>2. ~ 12. (현행과 같음)</p> <p>13. “<u>단체</u>”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p>
<p>제6조(운영시간) ① <u>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하절기인</u></p>	<p>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u>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로 한다.</p>	<p>1. 국민체육센터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p> <p>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p>
<p><신설></p>	<p>②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매주 월요일</u></p> <p>2. <u>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u></p> <p>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p>
<p>② (생략)</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p> <p>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20조(사용자의 책임) ① ~ ② (생략)</p> <p>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p> <p>④ (생략)</p>	<p>제20조(사용자의 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3조(관리위탁) ① ~ ④ (생략)</p> <p>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제23조(관리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p> <p>⑥ (현행과 같음)</p>

[별표]

거창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체육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평 일	공휴일		
스포츠 파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 육 경 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종합운동장 (트랙)			무료	무료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체 육 경 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실내체육관	체 육 경 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50,000	120,000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테니스장	회 원	월 사용료	7,000			
	비 회 원	일 사용료	4,000			
		월 사용료	20,000			
게이트볼장			무 료			
족 구 장			무 료			
궁 도 장			무 료			
농 구 장			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			무 료			
사 격 장			무 료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

□ 국민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어린이·노인	청소년·군인	일반인	비 고
수 영 장	1회권	개 인	1,500	2,000	2,500	1회 1시간
		단 체	1,300	1,700	2,200	“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
		12회	16,000	21,000	27,000	“
탁 구 장	1회권	개 인	1,000	1,500	2,000	1회 1시간
	월사용	1개월	15,000	20,000	25,000	“
		12회	11,000	15,000	18,000	“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13
----------	-----------

제출연월일	2011. 02.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진입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0. 11.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거창군과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촉진에 관한 협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마.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따른 절차와 조건등의 부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둠(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조, 제7조의4, 제8조, 제13조의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2, 제6조의4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 내역 기술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2. 31. ~ 2011. 01. 2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7. 그 밖에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상생발전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상생발전 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지역 내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 지역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4. 지역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지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지역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는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

⑧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항이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에 부적절하거나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일 경우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까지 효력을 가진다.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14
----------	-----------

제출연월일	2011. 02. 28.
제 출 자	거창군청

1. 개정이유

○ 지자체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2010.4.21)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식을 창업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개선·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2000년부터 추진해 오던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보조금 폐지 권고(‘10.4.21)에 따라 종료하고 업체 수혜효과가 큰 농공단지 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군 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18조 삭제).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00명 이하인 기업의 해외품질규격인증을 위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조항 삭제

나.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보조하는 현행 지원 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창업 성공률 향상을 도모함 (안 제19조의3).

○ 창업보육센터 지원방법 변경

- 현행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지원
- 변경 :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이나 행정지원 및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드는 비용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나. 예산조치 : 2011년 당초예산 확보(20,00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예산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2. 29. ~ 2011. 01. 1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창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에 대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혁신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200명 이하인 기업이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신청 및 정산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p>	<p><삭 제></p>
<p>제19조의3(창업보육센터 지원) ① 군수는 창업보육센터 내 보육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창업성공율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관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한정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p>	<p>제19조의3(창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에 대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15
----------	-----------

제출연월일	2011. 02.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배넛소의 대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거창군 애우(艾牛)의 사육기반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배넛소의 대부대상이 되는 농가와 대부 제외대상 농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대부대상 : 군 관내 거주자로서 한우사육기반 시설 등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마을이장·개발위원장·노인회장 모두의 추천이 있어야 함

○ 대부 제외대상 :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거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신청농가

다. 배넛소의 대부 신청 및 대부대상 농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배넛소를 대부받으려는 농가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고, 배넛소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 2명 이상으로 보증하여야 함

○ 배넛소 대부대상 농가는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선정토록 함

라. 배넷소의 대부두수와 대부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배넷소는 농가당 3두 이내로 대부하고, 대부기간은 배넷소를 대부 받은 날부터 30개월 이내로 함

마. 배넷소의 상환 및 상환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과 배넷소 사육농가의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배넷소 사육농가는 대부기간 내에 생후 6개월령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받은 두수대로 현금으로 상환하고, 성축은 사육농가의 소유로 함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사육농가는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리상의 변동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배넷소 대부계약의 해제사유와 사육농가의 손해변상 조치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사육농가가 생후 6개월령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배넷소의 관리상 책임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넷소를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대부받은 배넷소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
- 군수는 사육농가에 대하여 상환기한 이전에 대부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사육농가의 귀책사유로 배넷소의 도난·폐사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육농가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농지법」 제2조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5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5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 「축산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당초예산으로 확보(200백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1. 12. ~ 1. 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거창군 애우(艾牛)의 사육 기반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배넛소의 대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가”란 농업인으로 구성된 가족단위의 경영주체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배넛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이 농가에 대부하는 암소를 말한다.

제3조(대부대상) ① 배넛소의 대부대상은 군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로 하되,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마을이장·개발위원장·노인회장 모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한우사육기반 시설을 갖춘 농가
2. 가축사육 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가
3. 배넛소 대부로 한우사육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4.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고 구축할 수 있는 농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배넛소를 대부하지 아니한다.

1. 배넛소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농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신청농가(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농가는 제외한다)

제4조(대부신청 등) ① 배넷소를 대부받으려는 농가(이하 “대부대상 농가”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부대상 농가는 배넷소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 2명 이상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배넷소 가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협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대부대상 농가의 선정) ① 대부대상 농가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선정한다.

② 군수는 대부대상 농가를 선정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부대상 농가가 선정되면 대부두수를 포함한 대부결정 사실을 신청 농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부두수 및 대부기간) ① 배넷소는 농가당 3두 이내로 대부한다.

② 배넷소의 대부기간은 그 대부를 받은 날부터 30개월 이내로 한다.

제7조(배넷소의 상환) ① 배넷소를 대부받은 농가(이하 “사육농가”라 한다)는 대부기간 내에 생후 6개월령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받은 두수대로 군수에게 현금으로 상환하고, 성축은 사육농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임 등으로 인하여 사육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육농가는 그 배넷소를 매각하여 생후 6개월령의 암컷 한우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상환하고, 그 잔액은 사육농가의 이득으로 한다. 다만, 사육농가가 희망하면 대부 당시와 동등한 다른 배넷소로 대체하여 남은 대부기간 동안 사육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불임 등에 대한 감정은 공수의가 판정하되,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생후 6개월령 암컷 한우 가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협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공제 및 보험 가입) 사육농가는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사육농가의 책임 등) ① 사육농가는 대부받은 배넛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육농가는 대부받은 배넛소의 사육장소를 변경하거나 관리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육농가는 대부받은 배넛소에 대하여 질병·폐사·실종·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육농가는 그 대부기간 중에 타인에게 사육관리권을 위탁하거나 양도 또는 매도할 수 없다.

제10조(상환기한의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사변(事變), 전염병, 그 밖의 재난으로 대부기간 내에 상환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 기간은 그 상환기한 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1조(대부계약의 해제) 군수는 사육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대부받은 배넛소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상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배넛소의 관리상 책임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넛소를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사육농가에 대하여 상환기한 이전에 대부분수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변상조치) ① 사육농가가 고의 또는 과실 등 그의 귀책사유로 배넷소의 도난·폐사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육농가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변상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협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16
----------	-----------

제출연월일	2011. 02.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농업전문 기술교육으로 거창군 농업을 선도할 창조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거창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대학의 명칭, 위치 등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대학의 조직구성과 학장 등의 임무,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2장 대학기구로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심의·조정기구로서 설치하는 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대학의 입학자격과 등록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과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편성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졸업 및 졸업생 우대에 관한 사항, 재학생 상벌 및 학칙의 제정 등 학사 운영에 관하여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마. 그 밖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5장 보칙으로 규정하고, 종전 거창사과대학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시행사항을 부칙 경과조치 규정으로 둠(안 제19조, 제20조,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제7조, 제9조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당초예산 확보(52,00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1. 21. ~ 2.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군민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농업인재로 양성하고, 거창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농업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창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거창 녹색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 센터에 둔다.

제2장 대학기구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기술지원처장, 교무과장, 교육행정담당자 각 1명씩을 둔다.

② 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무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이, 기술지원처장은 작목기술 담당과장이, 교무과장은 대학업무 담당주사가,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학장 등의 임무) 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대학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무처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 행정, 예산운영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 기술지원처장은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담당한다.

제5조(강사의 위촉 등) 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연구직 공무원
2. 대학교수
3. 농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4. 우수 농장의 농장주
5. 그 밖에 농업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위촉되어 출강한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학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업무 담당과장, 작목기술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기관의 임원
2. 농업인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학사운영

제13조(입학전형)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3.5×4.5cm)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선발) ① 대학의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입학생은 해당연도 선발계획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은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3개과 이내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농업인의 요구 및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편성한다.

②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의 교육은 주 1회 3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하며, 수업시간은 연간 100시간 내외로 하되 교육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

제16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하되, 이후 동일과정에 등록하여 유급연도의 부족 수업시간을 이수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이 경우 유급 후 졸업대상자는 정원 외 인원으로 인정한다.

③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되, 유급 등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졸업생에게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졸업생에 대하여는 연속적인 지식습득 및 전문가그룹 육성을 위한 사후관리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7조(상벌) ①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② 대학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학사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또는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당 재학생을 제적시킬 수 있다.
-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학칙)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칙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예산지원)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사과대학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